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성주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의 법근거 마련과 계획적인 복지사업을 추진을 위함

3. 주요내용

○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
- 적용범위 : 성주군 공무원 및 군의원(안 제3조)
- 복지포인트의 기본 및 자율항목 설정(안 제5조)

○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(안 제6조)
- 구내식당 및 휴게시설의 설치 및 운영
-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· 운영

○ 후생복지사업의 시행(안 제7조)
- 모범공무원(가족) 산업시찰
- 동호회 활동 및 체육대회, 해외배낭여행 지원
- 영유아보육수당 지급 등

○ 성주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신설(안 제8조, 제9조)
-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및 시행에 대한 사항 심의
- 10인 이내(위원장 : 부군수, 부위원장 : 총무과장)

4. 관련법령 : 지방공무원법 제77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 안은 구체적인 관련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의제약을 받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등 복지사업 시행에 한계가 있어 군수가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

○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생명, 상해보험외에 자율 항목으로 건강관리, 자기개발, 여가활용, 가족친화와 후생복지시설 및 휴게시설의 설치와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퇴직자를 대상으로 국내외산업시찰 등 동호회 운영을 위한활동비 지원과 해외 배낭연수 지원 및 보육수당 지급과

○ 적용법위를 소속공무원 외에 청원경찰, 성주군의회 의원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군산하 전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내용으로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